

# 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제 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사무 처리지침 수정 표준안 안내

1. 민원조사담당관실-5746(2016.9.12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청탁금지법 후속조치 사항 중 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’ 제정에 관한 내용과 지침 표준안을 안내하였으나,

3.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에 맞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완한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 추진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 청탁금지법 자체강의 시 참고자료 요청이 있어 안내하오니, 직원 교육 시 참고하여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(권익위)

2. 청탁금지법 권역별 순회 설명회 발표자료(권익위)

3. 청탁금지법 강의 참고자료(교육부). 끝.

## 교육부장관

수신자: 시도교육청, 공직유관단체, 고등교육기관전체, 국립초중고등학교, 대학법인, 소속단체, 소속기관

주무관 **신소연**    행정사무관 **이홍복**    민원조사담당관 **이병석**

협조자

시행 민원조사담당관-5804 (2016-09-13)

접수 인재개발팀-00151 (2016-09-19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(어진동)

/ www.moe.go.kr

전화 044-203-6074 전송 044-203-6093

/ sinso1209@moe.go.kr

/ 공개

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